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89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의자 : 임이자 · 장동혁 · 조지연  
안상훈 · 이인선 · 최보윤  
배준영 · 권영세 · 서명옥  
우재준 · 최은석 · 송언석  
박대출 · 김상훈 · 김도읍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음.

이 같은 불합리한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배당을 통해 공정하게 공유되고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항 제  
5호의2 신설 등).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탁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탁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u></p>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신 설>

가. · 나. (생 략)

### 3. ~ 8. (생략)

## ② ~ ⑧ (생 략)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

2. -----  
-----

가. 제14조 제3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 나. · 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